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59

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이강일·김남근·김남희

김문수 · 김우영 · 김현정

민병덕 • 박정현 • 염태영

이용우 · 정준호 · 황명선

황운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각 군 참모총장은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는 직위로서,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넓으므로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에도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1항 후단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7767호) 및 「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76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 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참모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참모총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참모총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참모총장 등의 임명) ①	제19조(참모총장 등의 임명) ① -
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	
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	
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	
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, 해병	
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	
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	
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	
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 <u><후</u>	
<u>단 신설></u>	모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
	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